- 제2호 의안 : 정관 변경의 건

| 변경 전 내용 | 변경 후 내용 | 변경의 목적 |
| --- | --- | --- |
| **제7조 2(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1)**① ~ ⑥ ( 생 략 )⑦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.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.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2의 규정을 준용한다. | **제7조 2(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1)**① ~ ⑥ ( 좌 동 )⑦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.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.  | - 상법 제 350조의 3항 삭제됨에 따라 배당기준일 및 주식의 발행 시기와 관계 없이 모든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하는 것으로 제9조2를 정비함에 따라 준용규정을 삭제 |
| **제7조 3(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2)**① ~ ⑤ ( 생 략 )⑥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.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.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2의 규정을 준용한다. | **제7조 3(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2)**① ~ ⑤ ( 좌 동 )⑥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.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.  | - 상법 제 350조의 3항 삭제됨에 따라 배당기준일 및 주식의 발행 시기와 관계 없이 모든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하는 것으로 제9조2를 정비함에 따라 준용규정을 삭제 |
| **제7조 4(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3)**① ~ ⑤ ( 생 략 )⑥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. 그러나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.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. | **제7조 3(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3)**① ~ ⑤ ( 좌 동 )⑥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. 그러나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.  | - 상법 제 350조의 3항 삭제됨에 따라 배당기준일 및 주식의 발행 시기와 관계 없이 모든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하는 것으로 제9조2를 정비함에 따라 준용규정을 삭제 |
| **제 9 조의 2 (신주의 배당기산일)**회사가 유상증자,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. | **제 9 조의 2 (동등배당)**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(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)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| - 상법 제 350조의 3항 삭제됨에 따라 배당기준일 및 주식의 발행 시기와 관계 없이 모든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하는 것으로 정비 |
| **제11조 (명의개서대리인)**① ~ ③ ( 생 략 )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 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 | **제 11조 (명의개서대리인)**① ~ ③ ( 좌 동 )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 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. | - 상법 제 356조의 2, 전자등록제도에 도입에 따른 증권에 대한 명의개서대행업무 현황을 반영 |
| **( 신 설 )** | **제12조 (주주명부 작성 및 비치)**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. ② 회사는 5%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(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)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. | ① 전자증권법 제37조 제6항의 주주명부 작성비치･의무 반영②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3호 가목에 의거 회사가 소유자명세의 작성요청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|
| **제13조 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**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.② 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.③ 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, 기타 필요한 경우 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,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,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| **제 13조 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**( 삭 제 )① ( 좌 동 )② 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, 기타 필요한 경우 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 | -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라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명부 폐쇄절차가 사라진 현황을 반영 |
| **제14조의 2 (전환사채의 발행)**① ~ ④ ( 생 략 )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본 정관 제9조의 2 규정을 준용한다. | **제 14 조의 2 (전환사채의 발행)**① ~ ④ ( 좌 동 )⑤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. | - 상법 제 350조의 3항 삭제됨에 따라 배당기준일 및 주식의 발행 시기와 관계 없이 모든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하는 것으로 제9조2를 정비함에 따라 준용규정을 삭제 |
| **제15조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**① ~ ④ ( 생 략 )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본 정관 제9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. | **제15조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**① ~ ④ ( 좌 동 )⑤ ( 삭 제 ) | - 상법 제 350조의 3항 삭제됨에 따라 배당기준일 및 주식의 발행 시기와 관계 없이 모든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하는 것으로 제9조2를 정비함에 따라 준용규정을 삭제 |
| **제15조의 2(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**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 사채 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  | **제15조의 2(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**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 사채권 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 다만,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. | - 전자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은 사채에 대하여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 |
| **제41조 2 (감사위원회의 구성)**① ~ ②  ( 생 략 )③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④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( 신 설 )( 신 설 ) | **제41조 2 (감사위원회의 구성)**① ~ ② ( 좌 동 )③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.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.⑤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.⑥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(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,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)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| - 개정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(감사위원회 1인 분리선출) 반영- 개정 상법 제542조의12 제8항(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) 반영- 개정 상법 제542조의12 제3항 반영- 개정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 반영 |
| ( 신 설 ) | 부 칙이 정관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 |  |